

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김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3.

발 의 자 : 김진희, 김지훈, 원병일,
김영실, 박은경

1. 제안이유

향토문화유산 지정·보호·보존·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향토문화 계승·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·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 ~ 제7조)
- 라.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~ 제14조)
- 마.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향토사교육 실시와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5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5. 관련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다. 「문화재보호법」

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향토문화유산”이란 「문화재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지정·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·생활사적·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, 무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문화재 등으로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와 이에 준하는 유산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“향토사교육”이란 시의 역사와 인물, 문화재, 유형·무형의 향토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·보호·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2.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3.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4.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
5. 향토문화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
6. 향토문화유산의 보호·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에 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4조(향토문화유산 지정)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되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

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남양주향토문화유산 자료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향토문화유산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향토문화유산 지정해제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 및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지정서 등 교부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)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(동산에 속하는 향토문화유산을 제외한다)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1.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

2.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

제8조(고시)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리자 지정)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·관리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문화유산을 보호·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·단체, 향토문화유산 소재지 읍·면·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자(관리단체)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.

제10조(보존관리) 시장 및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·관리

2.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, 보호구역 설정사항,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소유자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
3.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
4. 진입로 정비, 경내 정화, 보호시설물 설치

제11조(점검)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고 보존·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경비지원 등)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제13조(집중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, 공예품 등 유형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, 이동 사유,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록작성보관)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,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향토사교육 및 협력 등) 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

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향토사교육 지원·육성·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 전문가, 역사 학자,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박물관, 도서관,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6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「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」 제3조”를 “「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」 제3조”로, “향토유적보호위원회”를 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제 호

지 정 서

- 종 별(지정분야):
- 명 칭:
- 소재지:
- 수 량:

「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
위 문화유산을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남 양 주 시 장 (인)

제 호

향토문화유산 관리자(관리단체) 지정서

관리자
(단체명)

소재지

대표자

성명

생년월일

「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제4항에 따라
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(관리단체)로 지정합니다.

다 음

1. 지정문화재 명칭 및 수량
2. 관리기간
3. 관리내용
4. 관리조건

년 월 일

남 양 주 시 장 (인)

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

(앞면)

관리번호		지정분야	
향토문화유산명		지정번호	
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	지정연월일	
소유자	주 소	관리자	주 소
	성 명		성 명
	(전화번호)		(전화번호)
규 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량 : ○ 면적 : ○ 규격/크기 : 	년대/시대	
연혁 및 지정사유			
(사 진)			

(뒷면)

위 치 도

관 리 사 항

점검일	점검자	점검내용	확인	점검일	점검자	점검내용	확인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2조(경비지원 등)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생략

-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.

-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‘권고적 형식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, 정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.

※ 현재 향토유적과 관련한 예산액(201-02 공공운영비)은 연 20,000천원

4. 작성자

문화관광과장 강혜숙

☑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~나. (생략)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10조제1항 관련)

구 분	시 · 도 사무	시 · 군 · 자 치 구 사무
1.~4.	(생략)	(생략)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.~나. 다. <u>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</u>	(생략) 1) 시·도 지정·등록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·보존 및 관리 2) 시·도 지정·등록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)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) 시·도 지정·등록문화재의 반출 허가 5)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의 보존·관리	(생략) 1) 시·도 지정·등록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보존·관리 2) <u>비지정문화재(향토유적 등)의 보존·관리</u> 3) 지방민속자료 발굴·조사 4)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의 보존·관리

☑ 문화재보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문화재”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유형문화재: 건조물, 전적(典籍: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), 서적(書跡), 고문서, 회화, 조각,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(考古資料)
2. 무형문화재: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전통적 공연·예술

나. 공예,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

다. 한의약, 농경·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

라. 구전 전통 및 표현

마.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

바.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(儀式)

사. 전통적 놀이·축제 및 기예·무예

3. 기념물: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

가. 절터, 옛무덤, 조개무덤, 성터, 궁터, 가마터,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(史蹟地)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큰 것

나.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

다. 동물(그 서식지, 번식지, 도래지를 포함한다), 식물(그 자생지를 포함한다), 지형, 지질, 광물, 동굴,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·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

4. 민속문화재: 의식주, 생업, 신앙,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, 기구,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

② (생략)

③ 이 법에서 “지정문화재”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: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2. 시·도지정문화재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3. 문화재자료: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·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④ 이 법에서 “등록문화재”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국가등록문화재: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

2. 시·도등록문화재: 시·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